농업기술센터 정기 종합감사 결과보고

《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20. 9. 9.(수) ~ 9. 11.(금)
○ 감 사 반 : 5명(감사팀장외 4명)
○ 감사범위 : 2018년 5월 이후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
○ 중점감사내용
 - 출장 및 연가, 공사, 초과근무 등 복무 위반 행위 점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지연·방치 등 직무태만, 소극행정 집중점검

■ 감사결과

(단위 : 건, 천원)

일련번호	소 관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기타	계	지급	회수	부과
계		7건	3	4	-	-	-	-	-
1	인력육성 생활자원	지방보조금 관리 소홀		◉	-	-	-	-	-
2	기획운영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	-	-	-	-	-
3	기획운영	공용차량 차량정비대장 등 관리소홀	◉	-	-	-	-	-	-
4	기획운영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	-	-	-	-	-
5	기획운영	건설공사 최종 하자검사 소홀	-	◉	-	-	-	-	-
6	기획운영 생활자원	일상감사 미이행	-	◉	-	-	-	-	-
7	기획운영	현금영수증 대금 지급 지연 등 소극행정	-	◉	-	-	-	-	-

□ 주요지적사례

1 지방보조금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 아울러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제출된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는 등 사업비 지출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지역개발채권 매입 부적정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별표 1〕 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의거 건설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대금 공급가액의 2.5/100, 수리·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건의 공사 및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계약자가 적정금액보다 부족한 채권매입필증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3 공용차량 차량정비대장 등 관리 소홀

○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기록관리를 위하여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용차량에 대한 차량정비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④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에 대해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⑤ 건설공사 최종 하자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⑥ 일상감사 미이행

○ 「예산군 일상감사 실시 지침」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일상감사는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하며,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업무의 경우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때에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 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집행 전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 업무의 적법·타당성 점검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음.

7 현금영수증 대금 지급 지연 등 소극행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 훈령」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면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소 4일에서 최장 19일까지 지연하여 현금영수증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